

상환전환우선주 RCPS, 상환주의 상환요건 및 투자자 주주의 상환청구 시 투자회사의 상환 불가능할 때 실무적 처리방안



상법 제345조제 1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즉,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상환주식의 상환하도록 합니다. 즉 **상환주의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총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더라도 회사는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상환주식의 상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관에 상환의 방법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

관으로 '이익이 부족하거나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명시적 판결은 없지만 다수의 견해는 **상환기간의 연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배당기능이익의 부족으로 미리 정한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전액상환이 가능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그 주식은 소멸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수만큼 감소합니다. 다만,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감소되나 자본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상환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사채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상법상 자기자본으로 계상되고, **상환은 이익을 가지고만 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없으면 상환이 언제까지나 지연될 수 있는** 반면, 사채의 상환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345조 제2항),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부터 상환한다"라고 규정하면 상환 만료일이 불분명하여 문제되므로, 통상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등 방식으로 상환기간을 정합니다.

상환주식의 상환을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고, 이익의 처분결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이므로(상법 제449조 제1항) 배당이익의 확정과 상환자금의 결정은 결국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업법무, 기술법무, 벤처기업,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